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8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이훈기·김 현·조인철

박정현 · 김용만 · 박지원

강준현 · 김주영 · 박희승

민형배 · 김교흥 · 서영교

김 유 • 박홍배 • 정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등).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5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제8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8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 7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 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 공제의 가입 등) ① (생 략) 공제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 유)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 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 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 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 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 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 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 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 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2	(생	략)
3.	(/);	47)

③ ~ ⑦ (생 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82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생략)
- ③ (생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_

<삭 제>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